

# 2020년도 제2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0. 27.(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5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01건(안전번호 제2020-143770호~144360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139654호~139659호는 상업용 저작물의 각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모두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139660호는 네이버 OGQ 마켓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불법 복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19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24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차 회의록 8쪽, 9쪽에 자구 수정 의견을 주셨음. 전차 회의록 5쪽에 저작물명, 사이트명, 6쪽에 제품명, 저작권 등록 제품명, 7쪽에 업체명, 제품명, 8쪽에 제품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인 신고 내용은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이견 없으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제2호 안건은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앱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므로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

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사이트명, 제품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회의 부분인 11쪽~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안건상정

####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중국 텐센트TV’, ‘영국 Sky One’, ‘콘텐츠웨이브’, ‘넷플릭스’, ‘tvN’, ‘(주)한글과컴퓨터’, ‘Adobe Systems Inc.’, ‘월트디즈니컴퍼니’, ‘일본 TV도쿄’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22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9654호~13965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민원인이 제출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보여주면서)민원인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민원인의 회사가 배타적발행권을 가진 출판물이 불법복제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저작권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제출하였음.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저작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출판 저작물을 텍스트 파일로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39654호~13965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업용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전송하였으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4462호~13447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9660호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사안임. 해당 국민신문고 건은 2020. 10. 12. 개최한 제2020-241회 1분과위원회 심의에 1,400건 이상의 사진이 게시된 ●●● 전체를 심의 요청함. 1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시정권고시 불법복제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저작물이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게시자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 10. 19. 개최한 제2020-253회 전체위원회에서 민원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무빙 이미지 24건에 대해 각 이미지 URL이 특정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으므로 ‘온라인대응팀’에 각 게시물 단위로 다시 채증해서 심의를 요청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전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온라인대응팀’은 무빙 이미지 24건에 대해 세부 URL을 확인하여 각 게시물 별로 채증 후 다시 심의를 요청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네이버 마켓에서 판매중이며 마켓 공지에는 “애니메이션 스티커는 현재 블로그(댓글, 게시글), 카페(게시글), 포스트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네이버 카페 댓글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미술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를 통해 전송되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3966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네이버 마켓에서 판매중인 무빙 이미지 상품을 불법 복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A 위원: 이견 없으며 시정권고 가결의견에 동의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966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9661호~14044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만화, 어문,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전을 설명하겠음.  
(만화 '다이아몬드 에이스 act 2'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일본에서 출판된 만화를 불법 스캔 후 번역한 것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140포

인트에 판매중임. 네이버시리즈온에서 1화는 무료로 제공되며 2화부터 500원에 이용 가능함.

(방송 '친애적의기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중국드라마 친애적의기군 5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58포인트에 판매중임. 친애적의기군은 국내 OTT 사업자인 wavve에서 독점 공개하고 있음.

(방송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27화를 230포인트에 판매중임. 27화는 2020. 10. 8. TV조선에서 방송되었음.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건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39661호~14044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B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A 위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9661호~14044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0-139654호~14044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2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3.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